

「2026년 의왕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 2차 공고

의왕시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에서는 의왕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6년 의왕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왕시 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6월 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I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의왕시 온라인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의왕시 본사소재 또는 공장등록된 중소 제조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중소기업 등 (붙임1. 참조)
※ 연매출 200억이하 및 지방세 완납기업 해당
- 지원분야 : ① 해외 지사화 지원(사후)
② 해외 B2B계정 구입비 지원 ③ 해외 SNS마케팅 지원
④ 외국어 홍보물(카탈로그, 홈페이지, 동영상 중 택1) 제작지원
- 지원목표 : 분야별 3~4社 내외 (예산범위 내 선정)

II

지원사항

○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금액
① 해외 지사화 이용금액 지원 (사후과제)		공공기관(KOTRA, GBSA, OKTA 등) 해외지사화 사업 이용금액 지원	총 소요비용의 100% 최대 350만원 이내
② 해외 B2B계정 구입비 지원 (사전과제)		alibaba, Kompass, ec21, Globalsources, tradeindia 등 해외 B2B 계정구입비 지원 (※ B2C 계정 구입비 제외)	총 소요비용의 100% 최대 350만원 이내
③ 해외 SNS 마케팅 지원 (사전과제)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웨이보, 잘로 등 글로벌 SNS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 (전문대행사를 통해 추진한 경우에 한함) (※ 국내 마케팅 제외)	총 소요비용의 100% 최대 350만원 이내
④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택1) (사전과제)	③-1. 카탈로그	외국어 카탈로그 신규 제작 지원	총 소요비용의 70% 최대 350만원 이내
	③-2. 홈페이지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지원	
	③-3. 홍보동영상	외국어 홍보동영상 제작지원	

※ 기업당 전체분야 중 최대 2개과제 신청 가능(단, 개별평가) / 전체분야 부가세 및 송금수수료 기업부담

○ 사업형태 : 사전신청 또는 사후신청 과제 유의하여 신청

※ 사후신청 과제는 해당 사업 공고년 기준으로 이미 사업비 집행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지원하는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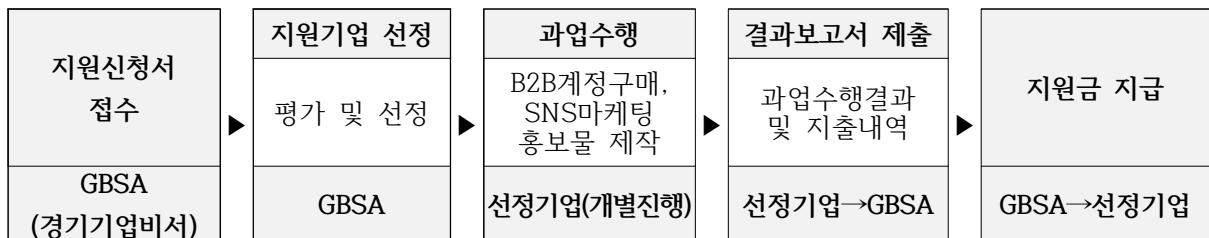
- 사후신청 과제 : 해외지사화

※ 필수 유의사항

- 해당 사업 공고년도 이전에 이미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예시) 2026년 사업공고 중 : 2026년 이전(~ 2025년도) 이미 완료된 건 신청불가
- 해당 사업 공고년도 이전에 신청하고 공고년도에 완료되는 건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예시) 2026년 사업공고 중 : 2026년 이전(2025년도) 신청하여 2026년도에 완료되는 건 신청불가
(예외 : GBSA GMS(해외지사화) 사업은 전년도 신청하고 사업기간이 공고년도에 속할 경우 신청 가능)
- 해당 사업 공고년도에 해외지사화 사업에 선정되고(개시기간 기준), 참가비 납부 및 협약 체결을 완료한 건에 대해 신청

※ 사업수행시 대행기관(대행업체)에 지급된 부가세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

○ 사업추진절차



○ 과제수행 유의사항 (해외SNS마케팅 및 외국어 홍보물 제작지원 분야)

- 선정통보일 이후 ‘전문 마케팅 대행사 및 제작사’를 통해 진행해야 함.
- 기업자체추진, 비전문대행사 수행시 불인정
(※ 대행사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업태 확인, 진흥원 판단)
- 수행기간은 선정 이후 4개월 이내로 권고
(※ 사업신청서상 수행기간 내 완료 必, 완료일은 '26.11. 초과불가)

○ 지원제외대상

- 지원제외 업종(붙임2. 참조)을 영위하는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체납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III

사업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 '26. 06. 29.(월) ~ 07. 10.(금)

○ 신청방법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 ‘경기기업비서’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 ‘통합 검색의 지원사업
찾아보기’ -> “의왕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마케팅 지원분야(신청예정)
” 검색 및 신청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접수신청 후 사업 담당자에게 완료여부 확인 권장(070-4116-4814)

○ 사업신청서 제출서류

공통	○ (신청서식) 참가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 (신청서식)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 공장등록증(해당 시에만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지방세완납증명서(민원24 발급)			
가점 항목	○ [제품인증] 산업재산권(국내외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국내외 규격인증서, 신기술마크, 품질인증서			
신청 분야별	해외 지사화 지원	글로벌 B2B계정 구매 지원	글로벌 SNS 마케팅 지원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 대행기관 협약서 · 대행기관 지출증빙자료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처본 · 외국어 카탈로그 · 계정구매 관련 인보이스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처본 · 외국어 카탈로그 ·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 대행기관 견적서	· 수출실적증명서 ·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 대행기관 견적서

○ 선정 및 발표

- 평가방법 : 평가표에 의한 서류평가
- 평가항목(100점) : 기업소재지, 업력, 수출준비, 기술성, 지원필요성 및 기대효과
- 가점 항목(5점)
 - 기업인증(5) : G-STAR기업, 경기도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이노비즈,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경기도일하기좋은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등
- 선정방법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발표 : ' 26. 7. 22(수) 이내 (※ 선정기업 개별 안내)

IV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제출기한 : 사업신청서 기준 완료일 이후 20일 이내 제출
- 제출처 : 담당자 이메일 제출 (korea9519@gsa.or.kr)
- 제출서류

제출서류	
· 각 분야별 지원금 신청서	· 지출증빙
· 분야별 추진결과 보고서	- (국내결제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 설문조사서	- (해외결제시) 인보이스, 외화송금확인증
· 지방세 완납증명서	- (법인카드결제시) 카드매출전표, 카드사본 첨부
· 지원금 입금계좌	· 그 밖의 분야별 추가 서류

- 지원금은 지원금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지급 (※지급시 백만원단위 절사)

V

지원사업 변경 및 취소

- 변경사항

- 단위사업 변경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변경
(※ 대행기관 변경, 사업기간 변경 등)
- 사전 승인없이 대행업체, 과제범위 등 주요사항 임의 변경시 불인정

- 지원결정 취소사항

- 사업 공고일 이전에 既 시행하였거나 완료된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하였거나 결과물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사업 추진 중 또는 완료시점에 사업장을 의왕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GBSA로부터 부당지원 수혜자로 제재가 결정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VI

문의처

○ 사업담당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거점센터 이정학 과장

- 연락처 : ☎070-7116-4814 / FAX 031-432-5536 / E-mail : korea9519@gsa.or.kr

VII

기타 유의사항

○ 유의사항 안내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과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④ 경기도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클린민원신고 안내문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자가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접수 불가나 반려 처리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때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 신고창구 : 031-259-6251

- GBSA 홈페이지(www.gbsa.or.kr) → 클린센터 신고하기

○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방법 (※조회기간 : 2025. 01 ~ 12)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www.trass.or.kr> 방문(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정보' 또는 상단 메뉴의 '자사실적정보'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의왕시 온라인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 지식서비스산업 범위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 전기통신업	61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 정보서비스업	63
○ 연구개발업	70
○ 광고업	713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 경영컨설팅업	7153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 전문디자인업	732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 포장 및 충전업	75994

※ 산업 업종코드 확인방법

☞ <http://kostat.go.kr>(통계청사이트) →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산업분류 → 검색 → 분류검색 → 사업자등록
증상의 종목 확인 및 검색 → 해당업종 및 분류코드 확인

[붙임2]

의왕시 온라인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 제외 업종 총괄표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 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531中	기획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홍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상기 이외 표기되지 않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유흥 및 사행성 관련 또는 전문가 판단에 의거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업종은 지원 제외